

- 서울특별시 시내버스정류소 등의 정비 및 관리 조례안 -

심 사 보 고

의 안 번 호	332
------------	-----

2019년 4월 22일
교 통 위 원 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19년 1월 23일, 홍성룡 의원 외 19명 발의

나. 회부일자 : 2019년 1월 31일

다. 상정일자

○ 제286회 서울특별시의회 제2차 교통위원회(2019년 4월 22일 상정·의결)

2. 제안설명의 요지(제안설명자 : 홍성룡 의원)

가. 제안이유

- 서울특별시 시내버스정류소와 시내버스정류소 편의시설의 체계적인 정비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시민의 안전과 편의 증진 및 대중교통 이용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

나. 주요골자

- “시내버스정류소”, “시내버스정류소 편의시설”, “정차범위” 등에 대하여 정의함(안 제2조)

- 시내버스정류소 등을 이용하는 시민의 안전과 이용편의 증진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시장의 책무를 정함(안 제4조)
- 시민들의 승하차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정차범위 내 시설물의 설치 제한 등을 정함(안 제6조)
- 시내버스정류소 등의 정비 및 관리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계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함(안 제10조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」 및 「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」

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

다. 입법예고

○ 기 간 : 2019. 2. 8. ~ 2019. 2. 15.

○ 제출의견 : 의견없음

라. 관련부서 의견조회 결과

○ 서울시장(도시교통실 버스정책과) : 수정가결¹⁾

- 「서울시 시내버스정류소 등의 정비 및 관리 조례안」에 대한 관련 법규 저촉 여부 검토(시설물 관리부서 의견조회 등) 결과 관련 법규 저촉사항은 없음

- 단, 조례안 중 제6조(정차범위 내 시설물의 설치제한 등) 1,2

1) 버스정책과-10706(2019.4.16.)

호에서 규정한 정차범위 내 시설물 설치 제한규정을 보도구간으로 명확히 하고,

- 제8조(유지관리) 준고영 하에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정류소 유지관리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유지관리에 참여하고 협조하는 방식으로 완화적용
- 기존 정류소시설물에 대한 유예기준을 부칙 경과규정에 추가하여 조례 개정시 문제점 발생을 차단하는 것이 필요할 것임

4. 검토보고 요지(수석전문위원 : 김동수)

가. 개요

- 동 제정안은 서울시 내에 설치 또는 관리되고 있는 시내버스 정류소와 시내버스 정류소 편의시설 등에 대한 설치 및 운영기준을 규정함으로써 시내버스 이용시민이 시내버스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

나. 검토의견

■ “용어의 정의” 관련(안 제2조)

- 동 제정안은 시내버스 정류소, 편의시설, 노선 및 정차범위 등 동 제정안에서 사용할 용어의 의미를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조례의 내용을 누구나 알기 쉽게 하고자 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할 것임
- 다만, 제4호는 버스가 정차하는 차도부분을 규정하고 있으나 동 조례의 제정 목적이 시내버스 정류소가 위치하는 보도 부분에 대한 체계적인 정비와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임을 고려할 때 보도 부분에 대한 정의로 수정할 필요가 있음

또한 정류소 개선범위를 “표지판 및 승차대 후방 10미터”로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버스가 정차하는 현장 여건을 반영함으로써 보다 실효성 있는 조례안이 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할 것임

■ “시장과 운송사업자의 책무” 관련(안 제4조)

- 동 제정안은 시장으로 하여금 시내버스 정류소 및 편의시설의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시책 마련과 관련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

고, 운송사업자로 하여금 서울시가 추진하는 정책에 협조할 수 있도록 시장과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책무를 규정하는 것으로

이를 통해 시내버스 이용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내버스 정류소와 편의시설 등을 이용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임

■ “정류소 등의 설치 및 운영기준” 관련(안 제5조)

- 동 제정안은 시내버스 정류소 및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보도 환경, 교통 상황 및 다른 시설물에 미치는 영향은 물론 시내버스 승하차에 방해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시내버스 이용시민의 안전과 편리를 도모할 수 있을 것임
- 다만, “정류소 등이 시민에게 혼란을 일으키지 않도록 통일성 및 일관성을 갖도록 한” 사항은 정류소 등의 시인성 및 이용 편리성을 증진시킬 수 있으나 현재 정류소 등이 설치되어 있는 기준과 동 조례 제정 이후 설치될 정류소 등의 설치 기준 등의 상이할 수 있다는 점에서 통일성과 일관성에 대한 범위를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

■ “정차범위 내 시설물의 설치 제한 등” 관련(안 제6조)

- 동 제정안은 시내버스 이용시민이 정차범위 내에 시내버스가 접근하는 것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시내버스가 도착했을 경우 안전하게 승하차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,

현재 시내버스 정류소 주변에 설치되어 있는 지하철 출입구 및 환기구, 가로수 등이 시내버스 이용승객의 시야를 방해할 소지가 있다는 점에서 이를 개선할 경우 시민들이 안전하게 시내버스를 이용하는데

기여할 수 있을 것임

- 다만, 동 조례의 제정 목적이 시내버스 정류소가 위치하는 보도 부분에 대한 체계적인 정비와 관리에 관한 사항이라는 점에서 동 조문의 명칭도 이에 맞게 수정할 필요가 있음

- 한편 안 제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내용 중 “교통관련 시설”과 “필요 시설물”에 대한 정의가 모호하여 실제 운영과정상 조문 해석에 대한 논란을 일으킬 수 있고,

가로수, 가로등, 전주, 한전박스, 소화전, 보도상 영업시설물 등의 경우 보도 및 정류소 등의 이용환경을 저해할 여지도 있으나 일부 시설의 경우에는 시민생활의 필수 요소로 각종 시설물 위치가 제한 될 경우 시민 불편을 저해할 우려도 있을 수 있음

■ “현황조사 및 정비” 및 “유지관리” 관련(안 제7조 및 안 제8조)

- 동 제정안은 시장으로 하여금 정차범위에 대한 시설물 설치현황을 정기적으로 파악하도록 하고, 운송사업자로 하여금 정류소 등을 유지관리 하도록 함으로써 시민의 시내버스 이용편의 증진과 안전한 시내버스 이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임

- 다만, 안 제8조제1항에서 운송사업자가 유지관리해야 하는 시내버스 정류소 및 시내버스 정류소 편의시설에 대한 범위가 불명확함에 따라 서울시와 운송사업자간의 업무범위가 명확하게 구분되어야 할 것임

■ 부칙 관련(안 부칙)

- 동 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현재 설치·운영 중인 정류소 등 시설의 경우 동 조례안의 내용을 위배할 가능성이 높은 시설물이 다수 존재한다는 점에서

동 조례의 적용 시점 및 경과규정을 보다 명확히 함으로써 조례 시행 및 적용의 안정성을 도모할 필요도 있을 것으로 판단됨

5. 질의 및 답변요지

- 질의 : 정차범위 내 기존 시설물의 이전 등과 관련하여 각 관련 기관 또는 관련 부서와 적극 협의해야 할 것이고, 조례 시행과 관련하여 경과규정이 필요하다 할 것임
- 답변 : 관련 법규 저촉 여부 검토(시설물 관리부서 의견조회 등) 결과 관련 법규 저촉사항은 없으나, 정차범위 내 시설물 설치 제한규정을 보도구간으로 명확히 하고, 기존 정류소시설물에 대한 경과규정 필요할 것임

6. 토론요지 : 없음

7. 수정안의 요지

가. 수정이유

- 동 제정조례안의 용어 정의를 명확히 하고, 정차범위 내 설치 제한 시설물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며, 정차범위 내 기존 시설물에 대한 유예기간을 규정함으로써 조례의 법적 안정성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

나. 수정 주요골자

- 동 제정조례안의 용어 정의를 명확히 함(안 제2조)
- 정류소 등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시장이 따로 정하도록 규정함(안 제5조제2항)
- 정차범위 내에 설치제한 시설물을 규정함(안 제6조)
-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유지관리하는 시설물을 규정함(안 제8조)
- 정차범위 내 기존 시설물에 대한 경과규정을 신설함(안 부칙 제2조)

8. 심사결과 : 수정가결

9. 소수의견 요지 : 없음

10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서울특별시 시내버스정류소 등의 정비 및 관리 조례안

의안 번호	관련 332
----------	-----------

제안년월일 : 2019년 4월 22일
제안자 : 교통위원장

1. 수정이유

- 동 제정조례안의 용어 정의를 명확히 하고, 정차범위 내 설치 제한 시설물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며, 정차범위 내 기존 시설물에 대한 유예기간을 규정함으로써 조례의 법적 안정성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

2. 주요 골자

- 가. 동 제정조례안의 용어 정의를 명확히 함(안 제2조)
- 나. 정류소 등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시장이 따로 정하도록 규정함(안 제5조제2항)
- 다. 정차범위 내에 설치제한 시설물을 규정함(안 제6조)
- 라.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유지관리하는 시설물을 규정함(안 제8조)
- 마. 정차범위 내 기존 시설물에 대한 경과규정을 신설함(안 부칙 제2조)

3. 참고 사항 : 생략

서울특별시 시내버스정류소 등의 정비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서울특별시 시내버스정류소 등의 정비 및 관리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제2조제1호, 제3호 및 제4호를 다음과 같이 각각 수정한다.

1. “시내버스정류소”란 시내버스의 여객이 승하차할 수 있도록 노선 사이에 설치된 장소를 말한다.
3. “노선”이란 시내버스를 정기적으로 운행하거나 운행하려는 구간을 말한다.
4. “정차범위”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을 말한다.
 - 가. 보도에 시내버스정류소임을 표시하는 표지판 또는 승차대가 설치된 곳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. 단, 표지판과 승차대가 같이 설치된 경우 표지판을 기준으로 10미터 이내인 곳
 - 나. 도로에 시내버스정류소임을 표시하는 정차면이 설치된 경우 해당 정차면

제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-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정류소 등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.

제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수정하고, 같은 조 같은 항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신설하며,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- ① 정차범위 내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설치

하여서는 아니 된다.

1. 시내버스를 타거나 내릴 때 이를 방해하는 시설물
2. 승객이 접근하는 시내버스를 확인하는 것을 방해하는 시설물
3. 교통안전시설 이외의 시설물
4. 한전박스
5. 가로변 상점
6. 그 밖에 시장이 정차범위 내에 설치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물

② 정차범위 및 그 주변에 시설물을 설치하려는 자는 제1항의 규정을 따라야 한다.

제8조제2항을 수정하고,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유지관리하는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가. 표지판

나. 노선도

다. 승강장

라. 의자

마. 승차대

바. 버스정보안내단말기

사. 그 밖에 시내버스정류소에 필요한 시설

③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이용편의와 안전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정류소 등을 유지관리 할 수 있다.

제9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-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에 필요한 인력·시설·장비 등 자격요건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.

부칙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정차범위 내에 설치된 시설물에 관한 경과조치) 제6조 신규규정에도 불구하고 신규규정 시행 전에 설치된 시설물은 이 조례를 시행한 날부터 3년 동안 설치 제한 시설물이 아닌 것으로 본다.

수정안 조문 2단 대비표

제정안	수정안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서울특별시 시내버스정류소 등의 정비 및 관리 조례안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서울특별시 시내버스정류소 등의 정비 및 관리 조례안</p>
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</p>	<p>제2조(정의) (제정안과 같음)</p>
<p>1. “<u>시내버스정류소</u>”란 「<u>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</u>」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시내버스의 여객이 승차할 수 있도록 노선 사이에 설치된 장소를 말한다.</p>	<p>1. “<u>시내버스정류소</u>”란 <u>시내버스의 여객이 승하차할 수 있도록 노선 사이에 설치된 장소를 말한다.</u></p>
<p>2. “<u>시내버스정류소 편의시설</u>”이란 시내버스정류소에 부가된 시설로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.</p> <p>가. 표지판</p> <p>나. 노선도</p> <p>다. 승강장</p> <p>라. 의자</p> <p>마. 승차대</p> <p>바. 버스정보안내단말기</p> <p>사. 그 밖에 시내버스정류소에 필요한 시설</p>	<p>2. (제정안과 같음)</p>
<p>3. “<u>노선</u>”이란 <u>자동차를</u> 정기적으로 운행하거나 운행하려는 구간을 말한다.</p>	<p>3. “<u>노선</u>”이란 <u>시내버스를</u> 정기적으로 운행하거나 운행하려는 구간을 말한다.</p>
<p>4. “<u>정차범위</u>”란 <u>표지판 및 승차대 후방 10미터, 도로경계석으로부터 0.5미터</u>를 말하며 표지판과 승차대가 같이 설치된 경우 표지판을 기준으로 하고 도로에 정차면이 표기된 경우 정차면까지를 말한다.</p>	<p>4. “<u>정차범위</u>”란 <u>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을 말한다.</u></p> <p>가. <u>보도에 시내버스정류소임을 표시하는 표지판 또는 승차대가 설치된 곳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. 단, 표지판과 승차대가 같이 설치된 경우 표지판을 기준으로 10미터 이내인 곳</u></p> <p>나. <u>도로에 시내버스정류소임을 표시하는 정차면이 설치된 경우 해당 정차면</u></p>
<p>제5조(정류소 등의 설치 및 운영기준)</p> <p>① 정류소 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</p>	<p>제5조(정류소 등의 설치 및 운영기준)</p> <p>① (제정안과 같음)</p>

수하여야 한다.

1. 정류소 등의 설치시 대상지 주변 보도 환경, 교통상황 및 다른 시설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다.
2. 정류소 등은 시민에게 혼란을 일으키지 않도록 통일성 및 일관성을 갖도록 한다.
3. 정류소 등의 설치시 「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」에 따른 교통약자의 이용편의 증진을 고려한다.
4. 시내버스정류소는 시민의 편의성 및 버스가 무리 없이 진출입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한다.
5. 시내버스정류소 편의시설의 설치시 승하차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여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고, 시야가 방해되지 않는 위치에 설치하여 관련 정보를 보다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.

② 이 조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정류소 등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.

제6조(정차범위 내 시설물의 설치 제한 등) ① 정차범위 내 시설물의 설치 제한에 관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정차범위 내 승하차 및 접근 버스 인지를 방해하는 시설물 설치를 제한한다.
2. 차도에 인접한 정차범위 내에 교통관련 시설 외 시설물의 설치를 금지한다.
3. 필요 시설물들은 정차범위의 시·중점 부분에 통합하여 배치한다.
4. 정류소 등의 부근 가로수는 시각을 가로막는 요소로 작용하므로 식재를 금지한다.

<신 설>

<신 설>

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정류소 등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.

제6조(정차범위 내 시설물의 설치 제한 등) ① 정차범위 내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.

1. 시내버스를 타거나 내릴 때 이를 방해하는 시설물
2. 승객이 접근하는 시내버스를 확인하는 것을 방해하는 시설물
3. 교통안전시설 이외의 시설물
4. 한전박스
5. 가로변 상점
6. 그 밖에 시장이 정차범위 내에 설치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물

② 정차범위 및 그 주변에 시설물을 설치하려는 자는 제1항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.

제8조(유지관리) 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는 정류소 등의 기능을 보전하고 시민의 편의와 안전을 위하여 일상적으로 점검, 정비하고 손상된 부분을 본래의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원상복구 등 정류소 등을 유지관리 한다.

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이용편의와 안전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정류소 등을 유지관리 할 수 있다.

<신 설>

제9조(개선사업 등) ① 시장은 무장애정류소의 설치 등 시민의 시내버스정류소 편의시설의 이용편의 개선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.

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<신 설>

② 정차범위 및 그 주변에 시설물을 설치하려는 자는 제1항의 규정을 따라야 한다.

제8조(유지관리) ① (제정안과 같음)

②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유지관리하는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가. 표지판

나. 노선도

다. 승강장

라. 의자

마. 승차대

바. 버스정보안내단말기

사. 그 밖에 시내버스정류소에 필요한 시설

③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이용편의와 안전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정류소 등을 유지관리 할 수 있다.

제9조(개선사업 등) ① (제정안과 같음)

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에 필요한 인력·시설·장비 등 자격요건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.

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정차범위 내에 설치된 시설물에

관한 경과조치) 제6조 신규규정에도 불구하고 신규규정 시행 전에 설치된 시설물은 이 조례를 시행한 날부터 3년 동안 설치 제한 시설물이 아닌 것으로 본다.

서울특별시 시내버스정류소 등의 정비 및 관리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시내버스정류소와 시내버스정류소 편의 시설 및 그 주변시설의 체계적인 정비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시민의 안전과 편의 증진 및 대중교통 이용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시내버스정류소”란 시내버스의 여객이 승하차할 수 있도록 노선 사이에 설치된 장소를 말한다.
2. “시내버스정류소 편의시설”이란 시내버스정류소에 부가된 시설로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.
 - 가. 표지판
 - 나. 노선도
 - 다. 승강장
 - 라. 의자
 - 마. 승차대
 - 바. 버스정보안내단말기
 - 사. 그 밖에 시내버스정류소에 필요한 시설
3. “노선”이란 시내버스를 정기적으로 운행하거나 운행하려는 구간을 말한다.
4. “정차범위”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을 말한다.

- 가. 보도에 시내버스정류소임을 표시하는 표지판 또는 승차대가 설치된 곳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. 단, 표지판과 승차대가 같이 설치된 경우 표지판을 기준으로 10미터 이내인 곳
- 나. 도로에 시내버스정류소임을 표시하는 정차면이 설치된 경우 해당 정차면

제3조(적용범위)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 관내에 설치하거나 관리되고 있는 시내버스정류소 및 시내버스정류소 편의시설 등(이하 “정류소 등”이라 한다)과 주변시설에 대하여 적용한다.

- 제4조(책무)**
- ① 서울특별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정류소 등을 이용하는 시민의 안전과 이용편의 증진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
 - ② 시장은 정류소 등의 주변 보도 상에 시설물의 설치에 관한 정책을 수립 및 시행할 경우 각 시설물이 그 목적달성을 위하여 조화롭게 설치 및 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 - ③ 정류소 등을 설치 및 유지관리 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(업무대행자를 포함한다. 이하 같다)는 시민의 안전과 이용편의 증진을 위한 시의 시책에 협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제5조(정류소 등의 설치 및 운영기준) ① 정류소 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

- 1. 정류소 등의 설치시 대상지 주변 보도 환경, 교통상황 및 다른 시설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다.
- 2. 정류소 등은 시민에게 혼란을 일으키지 않도록 통일성 및 일관성을 갖도록 한다.

3. 정류소 등의 설치시 「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」에 따른 교통약자의 이용편의 증진을 고려한다.
 4. 시내버스정류소는 시민의 편의성 및 버스가 무리 없이 진출입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한다.
 5. 시내버스정류소 편의시설의 설치시 승하차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여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고, 시야가 방해되지 않는 위치에 설치하여 관련 정보를 보다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.
-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정류소 등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.

제6조(정차범위 내 시설물의 설치 제한 등) ① 정차범위 내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.

1. 시내버스를 타거나 내릴 때 이를 방해하는 시설물
 2. 승객이 접근하는 시내버스를 확인하는 것을 방해하는 시설물
 3. 교통안전시설 이외의 시설물
 4. 한전박스
 5. 가로변 상점
 6. 그 밖에 시장이 정차범위 내에 설치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물
- ② 정차범위 및 그 주변에 시설물을 설치하려는 자는 제1항의 규정을 따라야 한다.

제7조(현황조사 및 정비) ① 시장은 정차범위에 대한 시설물의 설치현황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한다.

-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현황조사를 통해 시민의 시내버스 승하차를 방

해하거나 안전을 위협하는 시설물에 대하여 해당 시설물의 설치 및 유지관리 주체와 협의를 통해 정비할 수 있다.

제8조(유지관리) 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는 정류소 등의 기능을 보전하고 시민의 편의와 안전을 위하여 일상적으로 점검, 정비하고 손상된 부분을 본래의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원상복구 등 정류소 등을 유지관리 한다.

②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유지관리하는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가. 표지판

나. 노선도

다. 승강장

라. 의자

마. 승차대

바. 버스정보안내단말기

사. 그 밖에 시내버스정류소에 필요한 시설

③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이용편의와 안전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정류소 등을 유지관리 할 수 있다.

제9조(개선사업 등) ① 시장은 무장애정류소의 설치 등 시민의 시내버스 정류소 편의시설의 이용편의 개선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.

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에 필요한 인력·시설·장비 등 자격요건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.

제10조(협력체계 구축 등) ① 시장은 정류소 등과 주변시설의 정비 및 관

리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, 자치구, 서울지방경찰청 등 관계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.

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과 정류소 등과 주변시설의 정비 및 관리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.

제11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정차범위 내에 설치된 시설물에 관한 경과조치) 제6조 신규규정에도 불구하고 신규규정 시행 전에 설치된 시설물은 이 조례를 시행한 날부터 3년 동안 설치 제한 시설물이 아닌 것으로 본다.